

2010계약심사사례집

Jeju 제주특별자치도

【 목 차 】

I	계약심사제도 현황	1
1.	계약심사제도 개요	3
2.	계약심사 주요성과	5
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7
1.	토목공사 분야	9
2.	건축공사 분야	45
3.	설비공사 분야	61
4.	기술용역 분야	69
5.	일반·학술용역 분야	81
6.	물품구매·제조 분야	91
7.	인쇄물 분야	99
III	부 록	105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107
2.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	156
3.	계약심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현황	171



I. 계약심사제도 현황

1. 계약심사제도 개요

2. 계약심사 주요성과

계약심사 현황

1. 계약심사개요

가. 계약심사제 개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용역·물품 내역에 대해 원가심사 부서에서 거래실례가격조사, 현지확인, 창의적 공법 도입 등을 통해 적정 원가를 산출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발주부서의 설계능력을 향상하는 제도

※ 특히, 계약심사 결과는 계약부서의 예정가격 작성을 지원하고 있음

나. 계약심사제 운영 근거

- 1) 지방재정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4조
-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 3) 행정안전부 지침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 예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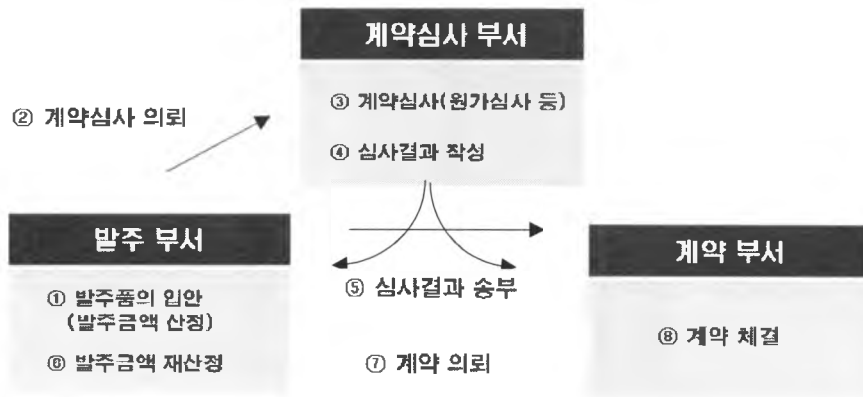
다. 계약심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대 상 기 관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도 의회 사무처 • 지방공기업, 공단 • 출연기관(50%이상) • 행정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 원가산정의 적정성 • 설계·공법의 적정성	• 공 사 : 추정금액 5억원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 용 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 하는 경우

라. 계약심사 제외 대상 사업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 2) 계약심사대상금액미만인 경우
- 3) 조달청에 직접 계약 요청하여 발주하는 사업
-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 심사나 설계변경 할 여유가 없는 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개산계약, 일괄입찰 등)
- 5)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계약 인 경우라도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1인 수의계약을 할 경우

마.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발주부서 (행정시, 공사 등 포함)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발주부서)
③ 심 사	▫ 원가 심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 등 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 관리	▫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행정시, 공사 등 포함), 실적 DB 관리

2. 계약심사 주요성과

2008. 8.13일 계약심사부서(1담당 5명)를 설치, 동년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 2010. 12월말 현재 총 955건9,834억을 심사·조정 결과 604억(6.2%)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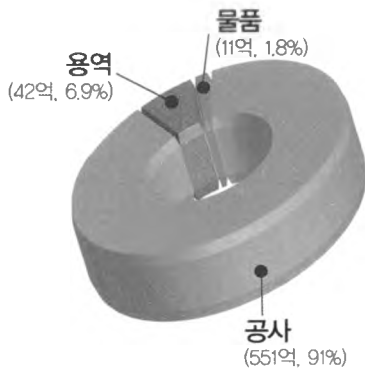
가. 계약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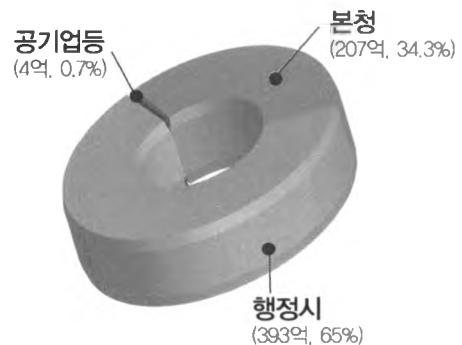
년도별	심사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조정액	조정금액	조정율	비 고
합 계	955	983,482	851,011	△60,471	△6.15%	
2008. 10.~ 12.	157	171,700	160,652	△11,048	△6.43%	
2009. 1 ~ 12.	453	508,846	482,218	△26,628	△5.23%	
2010.1 ~ 12.	345	302,936	280,141	△22,795	△7.52%	

나. 기관별 및 사업별 예산절감

[사업별]



[기관별]



다. 연도별 계약심사 실적

□ 2008년도

(단위: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율	비고
합 계	157	171,700	160,652	11,048	6.43%	
공 사	74	154,454	143,956	10,498	6.80%	
용 역	11	4,464	4,313	151	3.38%	
물 품	72	12,782	12,383	399	3.12%	

□ 2009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금액	조정액	조정율	비고
합 계	453	508,846	482,218	△26,628	△5.23%	
공 사	241	440,661	417,008	△23,653	△5.37%	
용 역	53	48,139	45,690	△ 2,449	△5.09%	
물 품	159	20,046	19,520	△ 526	△2.65%	

□ 2010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금액	조정액	조정율	비고
합 계	345	302,936	280,141	△22,795	△7.52%	
공 사	189	253,778	232,789	△20,989	△8.27%	
용 역	42	35,669	34,085	△ 1,584	△4.44%	
물 품	114	13,489	13,267	△ 222	△1.64%	



Ⅱ.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1. 토목공사 분야

2. 건축공사 분야

3. 설비공사 분야

4. 기술용역 분야

5. 일반·학술용역 분야

6. 물품구매·제조 분야

7. 인쇄물 분야



1. 토목공사 분야

○○초등학교 서측도로 확장공사

- 요청액 / 절감액 : 806,663천 원/124,363천 원(△15.4%)
- 조정내역 : 현장여건을 고려한 작업방법 조정
 -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크레인 하역작업 및 강관비계로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지상 높이 고려 이동식 말비계를 용하역 및 철거토록 공사방법 조정
- ※ 터파기 : 토사 1,090m³ 암 1,085m³ ⇒ 토사 1,032m³ 663m³
- ※ 석면 함유 폐기물처리비 : 526천원/톤 ⇒ 250천원/톤



이동식말비계 이용 기존 건물 철거 모습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 요청액 / 절감액 : 1,143,332천원/120,823천원(△10.6%)
- 조정내역 : 현장여건을 고려한 작업방법 조정
 - 우수관로인 흙관 접합 및 부설시 모르타르로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여건을 고려 고무링 접합 및 부설로 공사방법 조정
- ※ 전석 현장 사토암 유용
- ※ 기타원가 계산 요율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흙관 고무링 접합 및 부설 모습

○○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o 요청액 / 절감액 : 1,387,737천 원/54,002천 원(△3.9%)
- o 조정내역 : 현장여건을 고려한 작업방법 조정
 - u형측구 구조물 시공시 합판거푸집 이용토록 설계된 사항에
하여 현장여건을 고려 유로품으로 공사방법 조정
- ※ 레미콘 인력 타설 ⇒ 펌프카 타설
- ※ 기타원가 계산 요율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로품 설치 모습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요청액 / 절감액 : 3,443,504천원/86,534천원(△2.5%)
- 조정내역 : 현장여건을 고려한 작업방법 조정
 - 사업구간 기존 돌담철거를 인력으로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여건을 고려 기계철거로 공사방법 조정
- ※ pc암거 사급 ⇒ 관급
- ※ 기타원가 계산 요율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자재 반영하여 산정시 관급자재 부가세 미포함 금액



기존돌담 기계철거 모습

○○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요청액 / 절감액 : 1,196,540천원/77,470천원(△6.47%)
- 조정내역 : 하수도설계기준에 의거 맨홀 간격 조정
 - 하수관경 1,000mm이하인 경우 하수도설계 기준(환경부)에 따라 맨홀 간격을 100m를 표준으로 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0m 간격으로 설계되어 조밀하게 설치되고 있는바 경제적인 맨홀설치를 위하여 현장여건을 고려 60m 간격으로 조정
- ※ 전석쌓기 전석 선별품 제외(현장암 유용)
- ※ 합판거푸집 ⇒ 유로폼



맨홀 설치 모습

○○지구 과수생산 기반정비 사업

o 요청액 / 절감액 : 689,535천원/16,899천원(△2.45%)

o 조정내역 : 이중 계상된 물량 조정

– 배수로 토공 절취물량 산정시 기존 포장깨기 물량(암)을 반영하여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된바 이중 산정된 토공량 조정

※ 거푸집 물량 산정 착오 : $678\text{m}^2 \Rightarrow 358\text{m}^2$



기존포장 깨기 모습

○○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 요청액 / 절감액 : 5,171,800천원/696,100천원(△13.5%)

○ 조정내역 : 불필요한 공사물량 조정

- 암반이 노출된 경우 호안유실 또는 쇄굴 우려가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도 전석쌓기 수량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된바 암반 노출된 구간 전석쌓기 제외(△936m³)하여 물량조정

※ 교량 우수배제용 집수구 개소 조정 : 26개소 ⇒ 4개소

※ 전석쌓기 기초 거푸집 사용횟수 조정 : 4회 ⇒ 6회



암반 노출부분 전석쌓기 전경

○○지역 해저상수도 예비 배수지시설 공사

o 요청액 / 절감액 : 1,391,082천원/120,931천원(△8.7%)

o 조정내역 : 불필요한 공사물량 조정

- 「관로터파기 표준(상하수도본부 '07년)에 의하면 160mm 배수관인 경우 관로 하단 터파기 폭은 관로직경+여유폭(20cm) 반영하여 터파기 수량을 산출 하여야 하나 여유폭40cm로 반영된 바 터파기 물량조정

⇒ 토 사 : 1,981m³→1,617m³ 암 : 751m³→544m³

※ 골재 단위중량 조정

- 보조기층 : 2.0ton/m³ ⇒ 1.75ton/m³
- 석 분 : 1.8ton/m³ ⇒ 1.7ton/m³
- 보조기층 : 2.0ton/m³ ⇒ 1.75ton/m³



관로 터파기 전경

하천 재해예방 ○○천 제2저류지 설치공사

○ 요청액 / 절감액 : 2,203,324천원/1,636,682천원(△25.7%)

○ 조정내역 : 추정암반선 이하 전석쌓기 수량 제외

- 호안(절토사면) 보호를 위한 전석쌓기 및 돌붙임은 절개지 토사 부분은 필요하나, 암반형성 부분은 사업특성(목적)상 필요치가 않음에 따라 추정암반선 이하에 대하여 전석쌓기·돌붙임 수량 공제 적용

※ 기타 조정사항

- 추정암반선 적용 전석쌓기 단면조정 결과에 의한 부대공종인 쇄석붙임, 필터매트 부설 등 관련공종 수량 조정
- 횡 월류보 및 방류보 거푸집 조정 : 합판 ⇒ 유로폼 적용
- 관리용도로 콘크리트 포장두께 조정 : 20cm→15cm 적용



호안 절개지 사면 전석쌓기 전경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 안덕면 사계리
- 사 업 비 : 994백만원(도급 718백만원, 관급 276백만원)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L=2.9km(B=1.1m~3.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994	874	△119	△12.0

III 주요 심사내용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설유도시설편)」 규정에 의하면 도로표지병 설치하는 지방도로의 경우 1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5m 간격으로 계획된 설치개소 조정
 - 도로표지병 설치 수량조정 : 1,671개소 → 645개소
- 일률적으로 반영된 목재 난간 시설에 대하여 고저차가 없는 구간 목재난간 제외 (L=80m)
- 아스콘(표층) 포장에 대하여 소규모 인력 포장을 일률적으로 적용 하였으나 포장폭이 1.4m이상 되는 구간에 대하여 기계시공으로 조정
- 계약심사 기준일 적용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광령3리, 외도동 일원
- 사 업 비 : 3,202백만원(도급 2,844백만원, 관급 358백만원)
- 사업내용 : 호안정비 L=3,639m, 제방도로 L=2,300m B=4m
소교량 가설 4개소(라멘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3,202	2,465	△737	△23.0

III 주요 심사내용

- 전석 할증(4%)반영에 따른 할증 수량 제외
- 호안 상단부 천단콘크리트 방호석 설치부분 제외 → 178m³
- 기존 암거 철거에 따른 고철(철근) 가격 공제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철근 가공조립 인력품 조정
 - 철근공 3.8인 → 3.08인 보통인부 2.2인 → 1.2인
- 호안 상단부 방호석 간격 조정 : 1.5m → 2m
- 사토 운반에 따른 덤프트럭 주행속도 조정
 - 현장 실정에 맞게 교외 포장도로 기준으로 단가 적용
- 심사 기준일 적용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4대보험료)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도서관앞 등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도서관외 3개소
- 사 업 비 : 759백만원(도급 558백만원, 관급 201백만원)
- 사업내용 : 회전교차로 4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759	694	△65	△8.6

III 주요 심사내용

- 공사원가계산서 제비율 조정 : 기타경비 5.6% → 5.2% 적용
- 부족한 토사를 운반하여 오기 위한 덤프트럭 주행속도 조정
 - 현장 실정에 맞게 교외 포장도로 기준으로 단가 적용
- 보차도경계석에 사용되는 제주석(인조)은 관급자재로 현장도착도 가
격이므로 별도 계상된 자재운반비 제외
- 자재단가 조달청(제3자 단가계약) 및 물가정보지 등 활용 재조사 결
과 반영 : 삼각 주의표지, 도로표지병, 보차도경계석 등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천(2차)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애월읍 귀덕리, 봉성리 일원
- 사 업 비 : 5,151백만원(도급 4,641백만원, 관급 510백만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3,244m 교량 1개소 (L=17m B=6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5,151	4,715	△436	△8.5

III 주요 심사내용

- 전석쌓기 기초 암노출 부분 기초콘크리트 수량 제외
- 공사중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위한 불필요한 가설도로 삭제
- 기초 노임단가 산출시 도서지역 단가 산출 되었으나 단가산출시 도서 노임단가 재산정 되어 이중 계상된 노무비 조정
- 전석쌓기 품에는 채움콘크리트 타설품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계상된 채움콘크리트 타설비 적용 제외
- 기계경비 산정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계조장 인력품 삭제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천(영천사 하류) 재해예방 사업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433번지 일원
- 사 업 비 : 566백만원(도금 504백만원, 관급 62백만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834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566	407	△159	△28.1

III 주요 심사내용

- 추정 암반선 이하에 대하여 전석쌓기 수량 제외
- 사토재 암반이 발생함에도 전석쌓기용 암을 석산 구입으로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암 유용으로 적용
- 표준품셈에 의거 로우더 버킷계수 조정 : 1.2→0.55
- 중목적용된 가설사무실 및 중기운반 단가 조정
 - 실정에 맞게 중기운반 대수 조정 : 소규모 장비 통합 적용
 - 운반거리 기준 : 도청 → 서귀포시청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일원
- 사 업 비 : 2,810백만원(도급 2,065백만원, 관급 745백만원)
- 사업내용 : 오수관(PE 250mm) L=2,833m,
오수받이 194개소, 오수맨홀(원형1호) 73개소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810	2,268	△542	△19.3

III 주요 심사내용

-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등 사업규모 및 공사기간(9개월→18개월)에 맞게 공사원가계산서 제비율 조정
- 터파기(암) 암질에 맞게 작업효율 조정 : 보통암+연암/2 적용
- 가파도에서 본도로 운반 사토처리 계획을 지역 특성 등을 고려 가파도 지역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사토 운반거리 조정
- 오수연결관(D150mm)은 본당 6m로서, 배수설비 설치시 관로연장 6m 미만은 접합이 필요치 않으므로 실정에 맞게 접합품 제외
- 교통량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 현장여건에 맞게 안전휀스 설치 수량 및 교통신호수 적용일수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관광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157번지 일원
- 사 업 비 : 1,163백만원(도급 602백만원, 관급 561백만원)
- 사업내용 : 진입도로 정비 L=1,510m 진입도로 포장 A=373a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162	835	△327	△28.1

III 주요 심사내용

- 공사원가계산서 고용보험료 요율 조정
 - 계산산식(엑셀) 착오 : 69% → 0.69% 적용
- 암 소할 성토시 브레카 파쇄암 소할품 조정 : 100%→30%적용
- 사토 운반거리 조정 : 5km → 1.8km 적용
 - 설계도에 맞게 사토장 지정장소 까지의 거리로 조정
- 포장층 하부의 선택층(동상방지층 T=30cm)은 제주지역 특성상 필요치가 않은 공종으로 선택층을 제외하여 토공량 산출
 - 각기량 : 2,831m³→927m³적용, 사토량 : 1,945m³→1,026m³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1공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일원
- 사 업 비 : 962백만원(도급 612백만원, 관급 350백만원)
- 사업내용 : 자전거 도로 L=1,790m B=3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962	889	△73	△7.6

III 주요 심사내용

- 차선 조정없이 자전거도로 개설이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차선 제거 수량 산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
 - 차선제거 : 805m² → 644m²
- 보조기층, 기층, 표층에 필요한 물탱크 규격 조정
 - 현장여건에 맞게 16,000ℓ → 5,500ℓ 적용
- 견적단가에 의한 합성목재 등 난간설치비 조정
 - 조경공사 적산기준(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제15장 유희시설(목재의 가공 및 제작)품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조경공사 적산기준

○○ 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대정읍 무릉2리 일원
- 사 업 비 : 4,275백만원(도급 2,381백만원, 관급 1,894백만원)
- 사업내용 : 4차로 확장.포장 L=2.98km B=10~20.5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4,275	3,911	△364	△8.5

III 주요 심사내용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반영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
- 길어깨(노면) 불필요한 도로경계석 시공 부분 제외
- 가설울타리(분진망)는 설치기간에 따른 손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영구 설치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조정
- 토사·암의 운반비용 단가 조정
 - 설계도서(토적표)에 맞게 운반거리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천(당남수) 재해예방사업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360-1번지 일원
- 사 업 비 : 2,187백만원(도급 1,949백만원, 관급 238백만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765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187	1,531	△656	△30.0

III 주요 심사내용

- 추정 암반선 이하에 대하여 전석쌓기 수량 공제
- 다량의 사토재(암)가 발생함에도 전석쌓기용 자재를 석산구입으로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암 유용 적용
- FRP 자동수문 및 교량난간 자재단가 조정 : 사급 → 관급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으로 조달단가 적용
- 교량공 교면방수 및 배면방수 단가 조정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의거 교면방수 방식(도막식→침투식) 및 배면방수 투입인력(방수공, 보통인부) 조정
- 중기 및 가설사무소 운반거리 조정 : 도청→서귀포시청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항 어항분구 시설축조 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일원
- 사 업 비 : 1,830백만원(도급 1,748백만원, 관급 82백만원)
- 사업내용 : 어항 분구시설 L=89.6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830	1,788	△42	△2.3

III 주요 심사내용

- 암거 시공시 불필요한(전,후측) 비계수량 조정
 - 암거(A-TYPE)비계수량 : $65.99\text{m}^2/\text{개} \rightarrow 23.66\text{m}^2/\text{개}$ 적용
 - 암거(B-TYPE)비계수량 : $69.89\text{m}^2/\text{개} \rightarrow 27.06\text{m}^2/\text{개}$ 적용
- 육상에서 시공하는 필터사석의 할증률은 4%를 적용하여야 하나, 수중작업시 시공하는 경우와 같이 할증률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량 조정 : $2,380\text{m}^3 \rightarrow 2,063\text{m}^3$ 적용
- 암거 시공위치는 평균해수면 기준으로 수상과 수중에 걸쳐 있어, 전체 수중적용 단가를 수중부분이 차지하는 비율(74%)에 맞게 잠수조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항만·어항공사 시공관리 및 적산표준

○○로 문화의 거리 보행우선 시범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명동로 일원
- 사 업 비 : 2,047백만원(도급 1,791백만원, 관급 256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시정비 L=820m, B=5 ~ 10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047	1,698	△349	△17.0

III 주요 심사내용

- 인조현무암 판석포장 단가조정
 - 석재판 붙임 종류 대리석 → 점판암 적용
- 도로부 판석 기초 콘크리트포장 단가 조정
 - 무근구조물 인력포설 → 콘크리트 포장도로 표층 적용
- 야면석 가공단가 및 설치품 조정
 - 야면석 1일 가공수량을 커터기를 이용 2m'로 적용하였으나, 규정이 명확치 않아 이와 유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목·조경 견적지침서」에 의해 1m'당 석공 0.2인 적용
 - 야면석 설치 : 조경석 놓기품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조경공사 적산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목·조경 견적지침서」

○○로 확·포장 공사(1공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애월읍 어음리 일원
- 사 업 비 : 12,152백만원(도급 9,196백만원, 관급 2,956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L=4.44km, B=10.5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2,152	11,000	△1,152	△9.5

III 주요 심사내용

- 사토장(인근 토석채취장 L=14.2km) 지정에 따른 별도 계상된 사토장 정지비를 제외하여 사토처리 단가 적용
- 터파기, 흙깎기, 흙쌓기, 되메우기 등 토공작업 단가계산시 실적공사비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혼합적용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적공사비로 통일 적용
- 거푸집 단가 조정
 - 구조물(간단) 거푸집 사용횟수 조정 : 4회 → 6회 적용
 - 교량, 암거, 배수관 날개벽 등 : 합판(3,4회) → 유로폼 적용
- 금성천교 합성라멘거더 제작시 공장(충북 당진군)에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도서노임단가 할증(15%)을 제외 단가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교육도시 진입도로(본선부) 건설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 안덕면 서광서리 일원
- 사 업 비 : 15,054백만원(도급 9,568백만원, 관급 5,486백만원)
- 사업내용 : 4차로 확장 L=5.88km, B=27.0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5,054	13,411	△1,643	△10.9

III 주요 심사내용

- 돌담철기 단가 조정 : 기계 90%+인력 10%→기계 100% 적용
- 대형브레이카로 흙깎기(암) 작업에 따른 암 소할비용 제외
- 터파기 단가 조정 : 측구터파기의 실적공사비 단가기준은 장비조합 (기계90%+인력10%)을 적용하고 있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실 시공방법인 기계 100%를 적용한 단가 반영
- 가설울타리(분진망) 설치 단가 조정
 - 영구적 설치 → 공사기간에 맞게 손율적용(12개월·19%) 단가 반영
- 보조기층 자재대 조정 : 인근 석산(토석채취장) 견적단가 적용
 - 물가정보지 12,000원/m³당 → 견적단가 10,000원/m³당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정수장 배수지 확장사업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 사 업 비 : 4,076백만원(도급 2,652백만원, 관급 1,424백만원)
- 사업내용 : 배수지 시설 5,000톤/1개소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 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4,076	3,772	△304	△7.5

III 주요 심사내용

- 공사규모에 맞게 원가계산서 제비율 조정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의 6.4% → 5.8%적용
- 순성토재 수량 및 단가 조정
 - 배수지 성토 범면 기울기 조정 : 1:1.8 → 1:1.5 적용
 - 순성토재 : 석산(토석채취장)구입 → 인근현장 사토재 이용
- 배수지 내부 강관비계를 이동식 말비계로 조정
- 세륜 세차시설 전체 공사기간 운영으로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 운영 기간 반영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광역상수도 관로 연계사업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일원
- 사 업 비 : 1,567백만원(도급 796백만원, 관급 771백만원)
- 사업내용 : 배수·송수관로 시설 L=6,197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 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567	1,376	△191	△12.2

III 주요 심사내용

- 공사규모에 맞게 원가계산서 제비율 조정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의 6.8% → 5.5%적용
- 농경지 및 과수원 밀집지역에 대해 주변여건 등 현장실정에 맞게 무진동 암파쇄 수량 조정 : 1,026m³ → 63m³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한 표지병 설치 수량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리 교차로외 5개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레리와 5개소
- 사 업 비 : 883백만원(도급 659백만원, 관급 224백만원)
- 사업내용 : 회전교차로 6개소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883	814	△69	△7.8

III 주요 심사내용

- 공사원가계산서 제비율 조정 : 기타경비 5.6% → 5.2% 적용
- 부족한 토사를 운반하여 오기 위한 덤프트럭 주행속도 조정
 - 현장 실정에 맞게 교외 포장도로 기준으로 단가 적용
- 보차도경계석에 사용되는 제주석(인조)은 관급자재로 현장도착도 가격이므로 별도 계상된 자재운반비 제외
- 물가정보지 등 시중 가격정보 활용 재조사 결과 가장 경제적인 단가 반영 : 삼각 주의표지, 도로표지병, 보차도경계석 등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표지병 설치 수량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천(○○물) 재해예방 사업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일원
- 사 업 비 : 1,689백만원(도금 1,493백만원, 관금 196백만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649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689	1,213	△476	△28.2

III 주요 심사내용

- 전석쌓기 및 자재 수량 조정
 - 추정암반선 이하 전석쌓기 수량 공제
 - 다량의 사토재(암)가 발생함에 따라 전석자재 현장암 유용
- 사토단가 조정 : 로더(무한궤도) → 로더(타이어) 적용
- 교량공 교면방수 및 배면방수 단가 조정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의거 교면방수 방식(도막식→침투식) 및 배면방수 투입인력(방수공, 보통인부)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천(○○동)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일원
- 사 업 비 : 2,199백만원(도급 2,024백만원, 관급 175백만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416m, 교량 1개소, 저류지 1개소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 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199	2,020	△179	△8.1

III 주요 심사내용

- 저류지 시설 수량 및 불필요 공종 조정
 - 제내지측 전석쌓기 부분은 유수에 의한 기초 쇄굴 우려가 없어 기초콘크리트 수량 제외
 - 브레이카를 이용하여 암을 깎는 경우에는 면고르기가 필요 치 않아 해당(면고르기) 공종 제외
- 이중 계상된 도서지역 노임 할증(15%) 조정
- 흙깎기(암) 단가 조정 : 현장실정에 맞게 대형브레이카 굴삭작업능력 (Q값) 상한치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천(○○내) 재해예방 사업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일원
- 사 업 비 : 3,291백만원(도급 2,024백만원, 관급 1,266백만원)
- 사업내용 : 1. 데크 및 침목시설 1식
2. 아스콘포장 A=38.7a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 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3,291	3,151	△139	△4.2

III 주요 심사내용

- 사업규모 및 성격에 맞게 공사원가계산서 제비율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81%+3,294천원 → 0.91%+1,647천원
 - 기타경비 : 6.6% → 6.3%
- 출렁다리 및 사장교 제작 단가 조정
 - 육지부 공장제작에 따른 노임단가 도서할증(15%) 적용 제외
- 고무 주차블럭 자재단가 조정 : 사급 → 관급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으로 조달단가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우레탄 설치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 사 업 비 : 651백만원(도급 352백만원, 관급 299백만원)
- 사업내용 : 우레탄 트랙교체 8Line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354	336	△18	△5.2

III 주요 심사내용

- 건설업의 분류에 맞게 공사원가계산서 제비율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포장업 단독발주(전문건설업) 공사에 해당되어 일반건설(2.48%)이 아닌 특수·기타(1.24%) 적용
- 경계석 설치단가 계산식 오류로 과다 계상한 단가 조정
 - 127,934원/m → 16,900원/m 적용
- 경계석(120×150×500mm) 자재단가 조정
 - 53,900원/개 → 6,350원/개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시 일원 받기반정비 사업(○○○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565-1번지 일원
- 사 업 비 : 619백만원(도급 486백만원, 관급 133백만원)
- 사업내용 : 1. 우수관(600~800mm) 부설 L=1,090m
2. 콘크리트포장 복구 L=1,090m(B=3.0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619	431	△188	△30.4

III 주요 심사내용

- 사업규모에 맞게 공사원가계산서 제비율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의 1.81%+3,294천원 → 2.48% 적용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의 5.6% → 5.2% 적용
- 터파기(암) 암질 및 방식 조정
 - 주변현장 지층을 참조 보통암+연암의 평균치 적용 작업능력 산정
 - 실직적 터파기(암) 작업방법에 맞게 인력제외 기계 100% 적용
- 우수공 VR관 접합 및 부설단가 조정
 - 접합방식(모르타르→고무링) 조정 및 '09. 12월 품셈 개정결과 반영
- 일반 농로포장(포장폭 3.0m)으로 포장두께 조정(20→15cm)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항 동방파제 보강(4차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신양항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급 1,919백만원, 관급 81백만원)
- 사업내용 : TTP제작 및 거치(40T~50T) 173개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 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000	1,886	△114	△5.7

III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효율적용 방식중 산출금액의 적은 방식 적용토록 조정
- 표준품셈 규정에 의거 덤프트럭으로 모래 등을 운반할 경우 적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에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 계상토록 된바 싼 시간 트럭 유류비 조정
- 상치콘크리트 타설 단가 조정
 - 펌프차 시공능력 16.2m³/hr → 10.8m³/hr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용 적용기준

○○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2공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라2동 연북로~제주아트센터
- 사 업 비 : 1.829백만원(도급 1,161백만원, 관급 668백만원)
- 사업내용 : 1. 도로확장 L=760m B=25m
2. 인도 및 자전거도로 A=52a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 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829	1,601	△228	△12.5

III 주요 심사내용

- 토공(우수관) 터파기 수량은 현재 지반고 기준 산정하여야 하나 도로 계획고 기준으로 산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
- 절·성토 계획고가 1m 내외로 비탈면 유실 우려가 없어,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줄떼 및 평떼 시공물량 제외
- 현장사무실 및 창고 규모는 직접노무비와 사용기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과다하게 산정 된 수량 및 단가 조정
 - 현장사무실 100㎡→65㎡, 창고 80㎡→55㎡ 적용
 - 사용기간 24개월(손율 38%) → 10개월(손율 25%)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4공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라1동 일원
- 사 업 비 : 3,216백만원(도급 2,410백만원, 관급 806백만원)
- 사업내용 : 오수관거 L=3.88km, 배수설비 129가구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3,216	2,818	△398	△12.4

III 주요 심사내용

- 사업규모에 맞게 공사원가계산서 제비율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의 2.48%→1.81%+3,294천원 적용
- 터파기 및 사토운반 단가 조정
 - 사토시 적재품 반영으로 중복 적용된 터파기 집토품 제외 적용
 - 암질에 맞게 사토 운반시 체적환산계수 조정
 - : 보통암 → 보통암 + 연암의 평균치 적용
- 보조기층, 재생골재, 재생석분 운반단가(평균주행 속도) 조정
 - 일괄 시가지적용 주행속도를 현장실정에 맞게 시가지와 교외로 구분 주행속도 조정결과 반영
- 현장사무실 직접노무비(9억) 대비 현장사무소 규모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 건축공사 분야

성읍민속마을 가옥 보수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 추진
- 사 업 비 : 605백만원
- 사업내용 : 문화재지정 초가 9동 보수복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605	582	△23	△3.7

III 주요 심사내용

- 건축물 현장정리는 건물 연면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설덧집 설치에 따른 건축물 현장정리를 추가계상하고 있어 보수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으로 수량 조정
- 가옥별로 계상된 목재훈증처리 및 재질검사비용을 전체 가옥의 수량을 합산하여 단위당가격으로 조정
- 공종별로 각각 견적처리된 운반공사를 동일품목에 대하여는 전체 물량의 수량을 합산하여 단위당가격으로 조정
- 혼합폐기물로 계상된 건설폐기물을 건축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성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단가 적용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 2단계 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경기장 시설 확충으로 체육시설 이용객 편의제공
- 사 업 비 : 1,854백만원(도급금액 : 1,527 관급자재 : 326)
- 사업내용 :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지상1층, 1,093.53m²) 등 시설 확충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853	1,650	△203	△11.0

III 주요 심사내용

- 우수관(D=450mm, L=231m) 매입기초를 콘크리트 타설로 계획하고 있으나 매입위치가 단지 내로 차량진입이 없는 지역이며, 매입 깊이 등을 고려하여 잡석다지기로 조정
- 외벽을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하기 위하여 제치장거푸집을 사용함에 있어 미장마감으로 계획된 내벽까지 수량에 합산되어 내부 제치장 거푸집 수량을 유로폼으로 조정
- 테니스장 코트 재료 등은 시공이 필요하지 않는 구매물품으로 관급자재로 조정

서귀포오일시장 장옥 개축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 사 업 비 : 722백만원
- 사업내용 : 장옥 4,661.92m² 천정교체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772	708	△64	△8.3

III 주요 심사내용

- 전체 연면적으로 계상된 이동식 강관말비계의 수량을 공사가 추진되는 면적을 산정하여 조정
- 잡철물제작설치 품으로 계상된 기존 철골조 구조체의 찬넬 보강공사 품을 부대철골가공조립 품으로 조정
-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잇기 시공의 부대재료인 가스킷 및 프로파일 등의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하여 합산하고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잇기 산출내역에 부자재를 추가 반영(주재료비의 5%)고 있어 이중 계상되는 재료비 조정

제주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자동화사업 건설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재활용 자재의 효율적 처리시설 구축
- 사 업 비 : 2,972백만원(도급금액 : 2,684 관급자재 : 288)
- 사업내용 : 재활용기반시설 3,489.33m² 신축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972	2,820	△152	△5.1

III 주요 심사내용

- 바닥 무근콘크리트가 필요하지 않는 전기실, 펌프시르 보일러실 창고 등에 대하여는 무근콘크리트를 삭제하여 몰탈마감으로 조정
- 재활용작업장, 스티로폼감용실 등의 바닥은 차량이 출입되는 지역으로 쇠흙손마감을 콘크리트 면처리로 조정
- 천정 마감품은 경량철골천정틀 설치품에 포함된 사항으로 별도 계상된 설치품 삭제
- 가구 및 싱크대는 시공이 필요하지 않는 구매물품으로 관급자재 등으로 조정

서귀포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

I 사업개요

- 목 적 : 경기장 시설 확충으로 체육시설 이용객 편의제공
- 사 업 비 : 1,773백만원(도급금액 : 1,559 관급자재 : 214)
- 사업내용 : 실내야구연습장 신축 1,944.14m²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773	1,668	△105	△5.9

III 주요 심사내용

- 산업안전관리비 산출시 관급자재의 금액을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조정
- 철근콘크리트스라브(T=200)로 계획된 야구연습장 인조잔디 바탕은 비내력 바닥으로 쇠석 및 석분으로 조정
- 사무실 등에 접한 외벽은 단열재를 사용하는 공간쌓기 공정으로 결로방지 등을 예방할 수 있어 송이붙임바탕의 방수공정 삭제
- 외부 콘크리트포장면의 쇠흠손마감을 도로포장 마감면으로 조정
- 피칭머신 등은 구매물품으로 관급자재 등로 조정

모바일통신방송 컨버전스센터 신축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연구 및 교육시설 확충
- 사 업 비 : 4,183백만원(도급 3,158, 관급 1,025)
- 사업내용 : 센터 건립 3,819.84m²(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4,183	4,030	△153	△3.7

III 주요 심사내용

- 주차장의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우수관(400mm) 및 우수연결관의 계획은 주차장포장 기울기, 우수의 흐름방향 및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거리조정(우수관 299m→247m, 우수연결관 164m→80m)
- 보통암의 변환율로 적용된 깎기, 터파기, 사토운반시 토량의 변환율(L)을 연암의 변환율인 1.4로 조정
- V.R관(400mm)은 고무링으로 접합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모르타르 접합으로 계상되어 있어 고무링접합으로 조정
- 냉난방 제어용 PC는 전산실 PC로 사용이 가능하여 별도 계획된 PC 삭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신축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지역 의료시설 확충사업 추진
- 사 업 비 : 2,325백만원(도급금액 : 1,829 관급자재 : 496)
- 사업내용 : 보건소 1,923.96㎡ 신축(지상 2층)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325	2,225	△100	△4.3

III 주요 심사내용

-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출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비의 합계금액에 산업안전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산업안전관리비의 적용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에 산업안전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의 1.2배한 금액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초과되어 계상된 사항 조정
- 벽식 구조인 경우 라멘조 강관동바리 품에 8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관동바리 품 조정
- 무늬목 바탕의 크리어락카 도포를 제품의 성능을 고려하여 도포 삭제

서귀포 동부보건소 개·보수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지역 의료시설 확충사업 추진
- 사 업 비 : 469백만원
- 사업내용 : 보건소 개·보수 1,920m²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469	420	△49	△10.4

III 주요 심사내용

- 본 공사의 타일시공은 보양이 필요하지 않는 건식공법으로 타일보양공정 삭제
- 마블세면대 등 완성 규격품에 대한 할증적용 삭제
- 착색유리로 마감되는 MDF바탕면의 조합페인트 삭제
- 외부 바닥 데크시공면의 바탕콘크리트의 쇠흙손마감 삭제
- 가구 등은 시공이 필요하지 않는 구매물품으로 관급자재 등으로 조정

제주한라 방문객센터 건축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한라자생지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 사 업 비 : 3,392백만원(도급금액 : 2,898 관급자재 : 494)
- 사업내용 : 센터 신축 1,505.77m²(지하1층, 지상1층)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3,392	3,158	△234	△6.9

III 주요 심사내용

- 지붕 바닥마감은 징크판 시공과정에서 시트방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징크판으로 마감되는 사항으로 스라브구조체의 시멘트액체방수 삭제
- 지하층바닥의 로비, 한라전시관, 작업준비실은 인테리어공사에서 바탕고르기 및 바름몰탈이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중 계상된 구조체 공사의 몰탈바름 삭제
- 옥상 조경바닥 및 지하층 쉼터바닥은 별도 마감공사(지수판위 조경시설, 후로링마감 등)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방수층보호 콘크리트 위 쇠퇴손마감 삭제
- 기존 수목의 이식수량을 조정식재수량에 반영

조천정수장 수질실험실 증축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광역상수도 수질개선시설 확충
- 사 업 비 : 2,037백만원(도급금액 : 1,677 관급자재 : 360)
- 사업내용 : 건물 신축 1,183.190m²(지상 2층)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037	1,867	△200	△8.3

III 주요 심사내용

- 보호막설치는 원가계산 재경비의 산업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중계상 부분 삭제
- 공자갈시공 바탕면의 몰탈바름 품을 바탕고르기 품으로 조정
- 천정 마감재료의 시공품은 경량철골천정틀 시공품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별도 계상된 천정마감 시공품 삭제
- 부지 내에 기존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오수처리는 기존오수관에 연결토록 하여 FRP정화조 삭제
- 본 건물은 소방법 미적용 건축물이며, 기존건물의 물탱크를 활용할 수 있어 물탱크 및 배관시설 삭제

성읍민속마을 판매점 초가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 추진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사업내용 : 초가 3동 복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500	457	△43	△8.6

III 주요 심사내용

- 조립식 가설사무소 및 창고를 컨테이너로 변경
- 골함석 잇기는 공사기간 및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우장막 덮기로 조정
- 토공사의 인력사용을 장비의 반입통로 등을 확보하여 기계사용으로 조정
- 내벽 및 바닥타일은 콘크리트 바탕에 바탕고르기가 포함된 떠붙이기 공법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바탕면의 방수층 보호물탈 삭제
- 매립되는 기성재정화조의 보호벽(철근콘크리트공사) 삭제

가시리 국산화풍력사업 건축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풍력사업지역의 변전실 및 모니터링실 확충
- 사 업 비 : 813백만원(도급금액 : 691 관급자재 : 122)
- 사업내용 : 건물 신축 676.03m²(지상 2층)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813	773	△40	△4.8

III 주요 심사내용

- 이동식화장실은 원가계산서항목의 환경보전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내역에 환경보전비 항목을 계상하는 경우 원가계산서 항목의 환경보전비를 둘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역서의 이동식화장실 삭제
- 외벽 바탕은 면이 고른 콘크리트옹벽으로 외부 건식 벽타일공사의 바탕고르기 두께 조정(24mm→18mm)
- 바닥 미장 및 바탕고르기의 두께는 마감재료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 외벽 드라이비트 상도칠 마감은 몰탈바름 바탕에 시공되는 사항으로 부착력을 강화하는 메쉬 삭제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신축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지역 의료시설 확충사업 추진
- 사 업 비 : 1,261백만원(도급금액 : 1,083 관급자재 : 178)
- 사업내용 : 건물 신축 960.87m²(지상3층)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261	1,207	△54	△4.2

III 주요 심사내용

- 산업안전관리비 산출시 관급자재의 금액을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조정
- 타일공정의 바탕면은 시멘트액체방수위 보호몰탈을 시공토록 하고 있어 타일붙임(건식붙임)에 따른 바탕고르기는 불필요한 공정으로 삭제
- 외벽 송이타일 붙임 공정의 바탕면은 방수몰탈을 시공토록 하고 있어 타일붙임(건식붙임)에 따른 바탕고르기는 불필요한 공정으로 삭제
- 외벽 드라이비트 상도칠 마감은 몰탈바름 바탕에 시공되는 사항으로 부착력을 강화하는 메쉬 삭제



3. 설비공사 분야

○○리 국산풍력발전 실용화사업 송수전설비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따라 국산화풍력발전 실용화사업을 추진
- 사 업 비 : 2,452백만원
- 사업내용
 - 지중배전선로공사 : 1식 • 접지설비공사 : 1식
 - 전력감시설비공사 :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452	2,163	△289	△11.78

III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의 경비항목은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나, 직접 소요되는 비용산출이 어려워 공종별, 공사금액별, 기간별로 기준율을 산정하여 기타경비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중 계상되어 있어 이를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은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요율과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1.2배의 산출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나 비교없이 과다 계상된 금액을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0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로 테마거리 경관조명 조성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특색있는 테마(말)의 야간경관이 있는 거리 조성
- 사 업 비 : 324,972천원
- 사업내용
 - 조랑말 조형물 조명 : 24개소 • 안내문 시설 : 2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324,972	315,911	△9,061	△2.79

III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의 4대보험 등 공사원가 제비율을 조달청 제비율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조정
- 조랑말 조형물 기초의 제주석 단가는 견적(66,000원/m²)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재견적단가(38,000원/m²)로 조정
-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m당)의 일위대가 기준을 2010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재료비(533원 ⇒ 392원), 노무비(3,476원 ⇒ 888원)로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0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탐방안내소 신축[전기]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을 홍보하고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탐방안내소 신축
- 사 업 비 : 340,256천원
- 사업내용
 - 수변전설비(22.9KV 380V/220V 250KVA) 공사 : 1식
 - 비상발전기(3φ4W 380V/220V 75kW) 설치공사 : 1식
 - 피뢰침 및 접지설비공사 :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

II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340,256	332,309	△7,947	△2.34

III 주요 심사내용

- 내선규정 820-1항에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의 매설 깊이는 1.2m이상, 기타 장소의 경우는 0.6m이상으로 매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설계도서에는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관로가 매설되도록 되어 있으면서 매설 깊이를 1.4m로 하고 있어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전선과로를 설치하여 시설하여도 가능한 사항으로 인입관로 및 전선의 수량산출을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0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태양광발전 시설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내에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시설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사 업 비 : 359,014천원
- 사업내용 : 고효율 LED 조명 교체 : 1,621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II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359,014	346,796	△12,218	△3.40

III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전기공사는 ‘특수 및 기타건설’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일반건설 갑’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조정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기준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 계산된 금액을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0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주 0000 진입도로(도순-혁신도시간) 가로등 설치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제주 0000 진입도로 중 도순-혁신도시 구간의 도로공사에 따른 가로등 설치
- 사업비 : 804,328천원
- 사업내용
 - 가로등(1등용) : 107등 • 가로등(2등용) • 가로등 제어함 : 10면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1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804,327	728,585	△75,742	△9.42

III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의 환경보전비는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경오염방지시설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전기, 정보통신 등의 공사는 제외되는 사항으로 잘못 적용되어 있어 삭감 조정
- 원가계산서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발급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제6항 제20호에 의하여 전기공사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사항으로 잘못 적용되어 있어 삭감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0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 기술용역 분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세계자연유산 건립공사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
- 사 업 비 : 1,373백만원
- 사업내용 : 건물신축에 따른 전면책임감리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373	1,317	△56	△4.0

III 주요 심사내용

-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9호)”에 의거 감리사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각급 감리원 임금단가의 비율을 환산비로 정하며,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급감리원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각급 감리원 임금단가의 비율을 환산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고급 감리원 인 전기감리원의 환산비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급감리원에 대한 환산비(1.00)를 적용하여야 하나 감리사에 대한 환산비(0.830)를 적용함으로써 과다 계상된 감리원 배치인원 조정

종합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종합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 사 업 비 : 231백만원
- 사업내용 : 2동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 2동, 정밀점검 4동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31	199	△32	△13.9

III 주요 심사내용

- 당해 용역은 종합경기장 내 군집되어있는 건축물인 주경기장, 수영장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야구장 등 4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밀점검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87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연면적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별 해당인원수의 70퍼센트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 연면적 건축물인 주경기장 이외의 건축물 기준인원수를 70퍼센트로 조정
- 기준인원수의 조정은 시설물의 용도, 구조적인 복잡도 및 경과 년수와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등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오류별 조정비율 조정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 용 역 비 : 326백만원(도급)
-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용역기간 : 2010. 09 ~ 2011. 02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326	298	△28	△8.6

III 주요 심사내용

- “공사비”란 발주자의 총예정금액 중 보상비,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공사비 효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 산정시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금액 적용 대가 산정
- “배수설비 조사”는 실시설계에 따른 기본적인 기초조사 사항으로 제경비 및 기술료를 제외하여 대가 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10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원활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기본계획의 작성과 관련법률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효율을 제고 하고 깨끗한 환경 보전
- 사 업 비 : 250백만원(도급)
- 사업내용 : BTL 기본계획 작성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84	255	△29	△10.2

III 주요 심사내용

- 관거 현황조사 및 배수설비 조사 등 추가업무(직접정비)는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BTL)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기초조사 사항으로 제정비 및 기술료를 제외하여 대가 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품셈

성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성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 사 업 비 : 1,293백만원(도급)
- 사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293	1,169	△124	△9.5

III 주요 심사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효율산출 오류분 조정
 - 직선보간법에 의한 공사금액에 맞게 적용효율 조정·반영
: 2.916% → 2.9082% 적용
- “배수설비 조사”는 실시설계에 따른 기본적인 기초조사 사항으로 제정비 및 기술료를 제외하여 대가 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안로(금악~상가간) 확·포장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제안로(금악~상가간) 확·포장 공사』를 위한 품질확보 및 견실시공과 아울러 체계적인 원활한 사업 추진
- 사 업 비 : 1,714백만원(도급)
- 사업내용 : 전면 책임감리 용역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714	1,617	△97	△5.6

III 주요 심사내용

- 감리용역 적용 공사비가 실시설계 용역 결과의 금액(222억)으로 예정하여 감리대가를 산정 하였으나, 계약심사에 의한 공사금액이 조정되어, 계약심사 결과의 공사금액(202억)으로 적용하여 감리대가 산출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및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 사 업 비 : 4,000백만원(도급)
- 사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4,000	3,871	△129	△3.2

III 주요 심사내용

-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규정에 의하여 직접인건비의 직종 구분은 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와 기능사로 구분되고 기능공(보통인부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경비와 기술료 산정시 기능공은 제외하여 대가 조정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연계교통체계구축 대가 산정시 직접인건비 보정계수 중 대상사업 가중치(β) 조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교통정비구역($\beta=1.0$) 적용사항을 지역(애월항)실정에 맞게 교통권역($\beta=1.0$)으로 적용·산정한 대가로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2010건설공사 표준품셈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 표준품셈

제주시 하천 재해예방사업(병문천 3저류지외) 전면 책임감리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제주시 하천 재해예방사업(병문천 3저류지 외)』을 위한 품질확보 및 견실시공과 아울러 체계적인 원활한 사업 추진
- 사 업 비 : 857백만원(도급)
- 사업내용 : 전면 책임감리 용역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857	677	△180	△21

III 주요 심사내용

-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과정 등 감리회사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제외한 감리용역 기간 적용·조정
- 감리원 총 6인으로 계획된 것을 감리대상 사업규모·기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 담당별로 구분하여 책임감리원(감리사) 1인, 공사·품질·안전을 담당하는 보조감리원 각 1인 등 현장 실정에 맞게 총 4인을 투입하는 것으로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및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통합 전면 책임감리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품질확보 및
건설시공과 아울러 체계적인 원활한 사업 추진
- 사 업 비 : 1,165백만원(도급)
- 사업내용 : 통합 전면 책임감리 용역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165	1,068	△97	△8.3

III 주요 심사내용

- 감리용역 대상 공사비는 계약심사 결과에 맞추어 조정
 - 감리대상 공사비 : 163억 → 157억 적용
- 공사의 난이도 등 실정에 맞게 제경비 및 기술료 조정
- 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행당 감리목적
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손해배상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및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품질 확보 및 건설시공과 아울러 체계적인 원활한 사업 추진
- 사 업 비 : 1,363백만원(도급)
- 사업내용 : 전면 책임감리 용역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363	1,284	△79	△5.8

III 주요 심사내용

- 도시개발사업은 주요구조물이 없는 보통의 공종으로서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해외사례조사비 제외
- 손해배상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 도서지역·산간벽지 등에 적용하는 상주감리원 주재비 조정
 - 제주지역 감리회사와 공동도급을 하고, 공사현장이 시내에 위치하여 근무조건이 양호하므로 현장실정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 비율(30%)만큼 주재비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및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5. 일반 · 학술용역 분야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률에 의거 적정 처리
- 용 역 비 : 1,493백만원(도급)
-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20,977톤
- 용역기간 : 2010. 06 ~ 2013. 02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493	1,089	△404	△27.1

III 주요 심사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수수료 조정
 -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의 견적단가를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지(기획재정부 허가)에 수록된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된 단가 적용
- 설계도서 및 표준품셈에 맞게 폐기물 성상 재분류 단가 적용
- 건설폐기물 처리 운반비 조정
 - 실 운반거리 적용 : 20km → 16km(인근 처리장)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지(기획재정부 허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3공구 · 4공구)

I 사업개요

- 목 적 :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률에 의거 적정 처리
- 용 역 비 : 636백만원(3공구 · 274백만원, 4공구 · 362백만원)
-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 처리 23,149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3공구	274	224	△50	△18.2
4공구	362	289	△73	△20.2

III 주요 심사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수수료 조정
 -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의 견적단가를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지(기획재정부 허가)에 수록된 2010년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적용
- 콘크리트 포장깨기 설계도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수량조정 결과에 의거 폐기물처리 수량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지(기획재정부 허가)

조천 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조천 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률에 의거 적정 처리
- 용 역 비 : 1,668백만원(도급)
-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50,570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668	1,554	△114	△6.8

III 주요 심사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수수료 조정
 -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의 견적단가를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지(기획재정부 허가)에 수록된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된 단가 적용
- 건설폐기물 처리 운반비 조정
 - 실 운반거리 적용 : 20km → 15km(인근 처리장)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지(기획재정부 허가)

제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 용 역 비 : 375백만원(도급)
- 용역내용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375	310	△65	△17.3

III 주요 심사내용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품셈의 적용과 타 지자체 유사용역 비교, 점토 결과에 의거 소요인력 조정
- 사전 환경성검토 표준품셈에 의거 현장실정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 중점, 일반항목 및 적용요율 조정 결과에 의한 소요인력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품셈
- 사전 환경성검토 표준품셈

판포지구(판포구역) 배수개선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판포지구(판포구역) 배수개선 사업』 지구내 문화재 표본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에 대한 자료 확보 및 개발의
효과적인 방안 수립
- 사 업 비 : 250백만원(도급)
- 사업내용 :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50	234	△16	△6.4

III 주요 심사내용

- 현장인부임 퇴직적립금 조정
 - 1년이상 계속적 근로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본 용역은 기간이 40일로 사역인부
에 대하여 적용 제외
- 제경비 및 학술료 요율 조정
 - 현장여건 및 실정 등을 고려 상한치에서 평균치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및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조천 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조천 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구간의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관리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피해 최소화
- 용 역 비 : 431백만원(신촌·219백만원, 함덕·212백만원)
- 용역내용 : 사후환경 영향평가 조사 용역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신촌 ~ 함덕	219	205	△14	△6.4
함덕 ~ 동북	212	198	△14	△6.6

III 주요 심사내용

- 지역 제한경쟁 입찰대상 용역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한 출장 여비는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역에서 출장여비를 제외한 대가 산정·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2008-224호)

서귀포시 하천기본계획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하천의 홍수관리, 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천기본계획 수립
- 사 업 비 : 2,242백만원(도급)
- 사업내용 : 하천 기본계획 용역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242	2,180	△62	△2.8

III 주요 심사내용

- 하천측량 중 횡단측량 간격은 25m마다 계획된 것을 횡단측량 기준에 의거 50m마다 측량하는 것으로 횡단간격 조정
-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규정에 의하여 직접인건비의 직종 구분은 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와 기능사로 구분되고 기능공(보통인부, 콘크리트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경비와 기술료 산정시 기능공은 제외하여 대가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6. 물품구매 · 제조 분야

○○○○○ ○○호 수리

I 사업개요

- 목 적 : 2010년도 ○○○○○ ○○호(250톤)의 정기 수리
- 사 업 비 : 149,779천원
- 사업내용
 - 선체상가 수리 및 정비 : 1식 • 통신부 수리 : 1식
 - 전기부 수리 : 1식 • 기관부 수리 :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II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49,779	148,016	△1,763	△1.20

III 주요 심사내용

- 어선 폐유처리, 기름걸레 등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에게 수거처리하여야 하는 바,
- 폐기물 처리에 따른 처리비용을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수수료를 반영하여 조정
- 선체도장에 따른 면적(m²)당 재료비 수량 및 품이 임의적으로 산출되어 설계되어 있어 표준품셈에 적용된 수량 및 품으로 조정
- 통신부 자이로, 조타부, 레이다 등 정비·점검에 따른 인력 품의 산정을 통신 관련직종인 통신기계조립공을 적용하여야 하나 기계정비공을 계상한 설계서의 인력 품을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0년도 정보통신 표준품셈
- 2010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시 ○○거리 지역상가 간판정비사업

I 사업개요

- 목 적 : ○○○시 ○○○거리의 지역상가 간판을 개선하여 문화와 도시경관이 조화되는 ○○○ 문화의 거리 조성
- 사 업 비 : 496,000천원
- 사업내용
 - 간판설치공사 : 104개
 - 간판철거공사 : 186개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II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496,000	420,076	△75,924	△15.31

III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시 소모성 물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간접재료비인 소모재료, 공구, 기구 등의 비용은 공구손료, 잡자재비 등으로 일위대가에 반영되어 있어 삭감 조정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용인 환경보전비는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방지 시설, 공사시공 중 발생하는 오수·탁수처리시설, 토공사 차량의 세륜시설 및 먼지방지시설, 공사장 내의 토사유출방지시설, 발파작업 시 폭음·진동·암석비산 방지시설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본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삭감 조정

- 4대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2010년도 조달청 발표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여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0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0년도 기계설비 표준품셈
- 2010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도 공사업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시 약 및 초 자 료 구 입

I 사업개요

- 목 적 : 전염병 실험실 진단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에 사용
- 사 업 비 : 800백만원
- 구매내용 : Brucella Abortus Antiserum 등 124 품목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800	790	△ 1	△2.0

III 주요 심사내용

- 전문 유통업체 2개소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조사한 후 발주부서에서 조사된 견적가격 대비 가격의 적정성을 감안, 최저가격 반영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심사 검토사항 >

- 시중에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발주부서에서 조사한 가격 대비 최저가격 적용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지하수 업무지원시스템 서버 구입

I 사업개요

- 목 적 :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 사 업 비 : 47백만원
- 구매내용 : 지하수업무지원시스템 서버 구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47	30	△ 17	△36.7%

III 주요 심사내용

- 전문 유통업체 2개소 추가 견적 및 조달청 가격정보를 통하여 거래실레가격 조사한 후 발주부서에서 조사된 견적가격 대비 가격의 적정성을 감안, 최저가격 반영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심사 검토사항 〉

- 시중에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거래실레가격을 조사하여 발주부서에서 조사한 가격 대비 최저가격 적용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7. 인쇄물 분야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접지형) 제작

I 사업개요

- 목 적 :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명에 대한 전산 D/B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주민 등이 실생활에 활용토록 생활안내도를 제작·보급하여 도민과 관광객 등의 편의 도모하고자 함
- 사 업 비 : 249백만원
- 규 모 : 4*6배판 전지, 아트지 또는 스노우지120g, 읍셋인쇄, 25,000부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간

II 심사결과

(단위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49	244	△5	△2.0

III 주요 심사내용

- 용지가격 조정 : 물가정보지 및 지류업체 거래가격 적용하여 용지대 조정
- 필름출력비 및 인쇄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적용
- 경비조정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변동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적용

2011년도 ○ ○ ○ 수첩발간 제작

I 사업개요

- 목 적 : 도정업무현황을 수록한 공무원 업무용 수첩을 발간 제작하여 업무용 참고자료 및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
- 사 업 비 : 38백만원
- 규 모 : 4×6배판 16절, 양면4도, 옵셋인쇄, 10,000부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II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38	37	△1	△3.0

III 주요 심사내용

- 용지가격 조정 : 표지 및 내지의 가격을 업체 공표가격인 물가 정보지 적용된 것을 지류업체 거래실례가격 적용으로 용지가격 조정
- 발주부서 기본파일 제공으로 조판면수 10% 감산 조정
- 필름출력비 : 발주부서에서 내지면에서 과다단가적용된 것을 조달청 인쇄요금규정에 의거 적용단가 조정
- 인쇄비 : 인쇄통수【용지소요량(연*연당통수(2절 1,000통*부수단가)에 따른 인쇄료 단가 적용하여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적용

○○○ 홍 보 물 발 간

I 사업개요

- 목 적 : 전시유물에 대한 홍보 자료 활용 및 전시관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도모
- 사 업 비 : 50백만원
- 규 모 : 전시도록 1식, 홍보포스터 1식, 안내리플릿1식, 초청장
1식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II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50	44	△6	△12.9

III 주요 심사내용

- 용지가격 조정 : 지류업체 거래가격 적용 및 국판규격이므로 4*6전지
단가의 69.4% 적용 조정 반영
- 인쇄비용 조정: 인쇄비 및 인쇄판비는 조달청인쇄기준요금 규정에 의
하여 인쇄판비는 4*6판 전지의 69.4%적용하고, 국배판계열로 인쇄할
경우 0.8% 감산하여 조정 반영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적용



Ⅲ. 부 록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2.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
3. 계약심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

1-1-1 목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작성, 공사손해보험 가입, 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작성방법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2절 추정가격

1-2-1 추정가격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1-2-2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당해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 (1)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 (2)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 (1)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2)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 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제3절 예정가격

1-3-1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1-3-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1. 예정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희망수량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의 결정은 당해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4.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구매·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구매·제조,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3-3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1. 작성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2.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한 가격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1-3-4 예정가격의 결정시 세액합산 등

1.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방자가 부담할 원재료의 매입세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1-3-5 예정가격산정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6 예정가격의 비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개산계약·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7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1.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기타공사 :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임차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제외

- (3)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경우

2.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국제입찰의 경우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3-8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및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장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제1절 기초금액 작성

2-1-1 기초금액의 확정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2-1-2 기초금액의 확정

1. 재료비·노무비·경비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등을 합산한다.
2. 기초금액이 가감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1-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집행 5일전까지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2-2-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내에서 7개, $0\% \sim -3\%$ 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2-2-2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1.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 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2.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2-2-3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제3장 감정가격·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제1절 감정가격

3-1-1 감정가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3-1-2 예정가격의 결정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 1백만원이하 이거나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견적가격

3-2-1 견적가격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3-2-2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거래실례가격

3-3-1 거래실례가격의 개념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바 그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자는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3-3-2 거래실례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지)
2.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지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등에 게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3-3-3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한다

〈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하여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단가산출표, 일위대가표 등의 물품 산출기초가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사급자재 등에 대한 물품은 원가계산요소가 되므로 직접재료비로 분류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산정요율에 반영 가산되어야 한다.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총칙

4-1-1 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키관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

4-1-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4-1-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1.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 노무비=노무량×노무비 단가
 -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2.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7-2-1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4-1-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이 예규에 의거, 원가계산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2절 제원가계산

4-2-1 제원가

제원가라 함은 제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2-2 작성방법

제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2-3 재료비

재료비는 제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1.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 재료 및 4-2-5의 (13)목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2.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3.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4. 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4-2-4 노무비

1. 노무비의 구성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3. 간접노무비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 각목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4. 제2호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text{직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 단가}$$

5. 제3호의 간접노무비는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6. 제5호의 간접노무비는 제4호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직접인건비보다 간접노무비가 초과하는 경우 증빙자료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4-2-5 경비

1. 경비의 개념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2. 경비의 산출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중 정액법에 따라 기준내용 연수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 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4-2-6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산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4-2-7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4-2-6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2-8 이윤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3절 공사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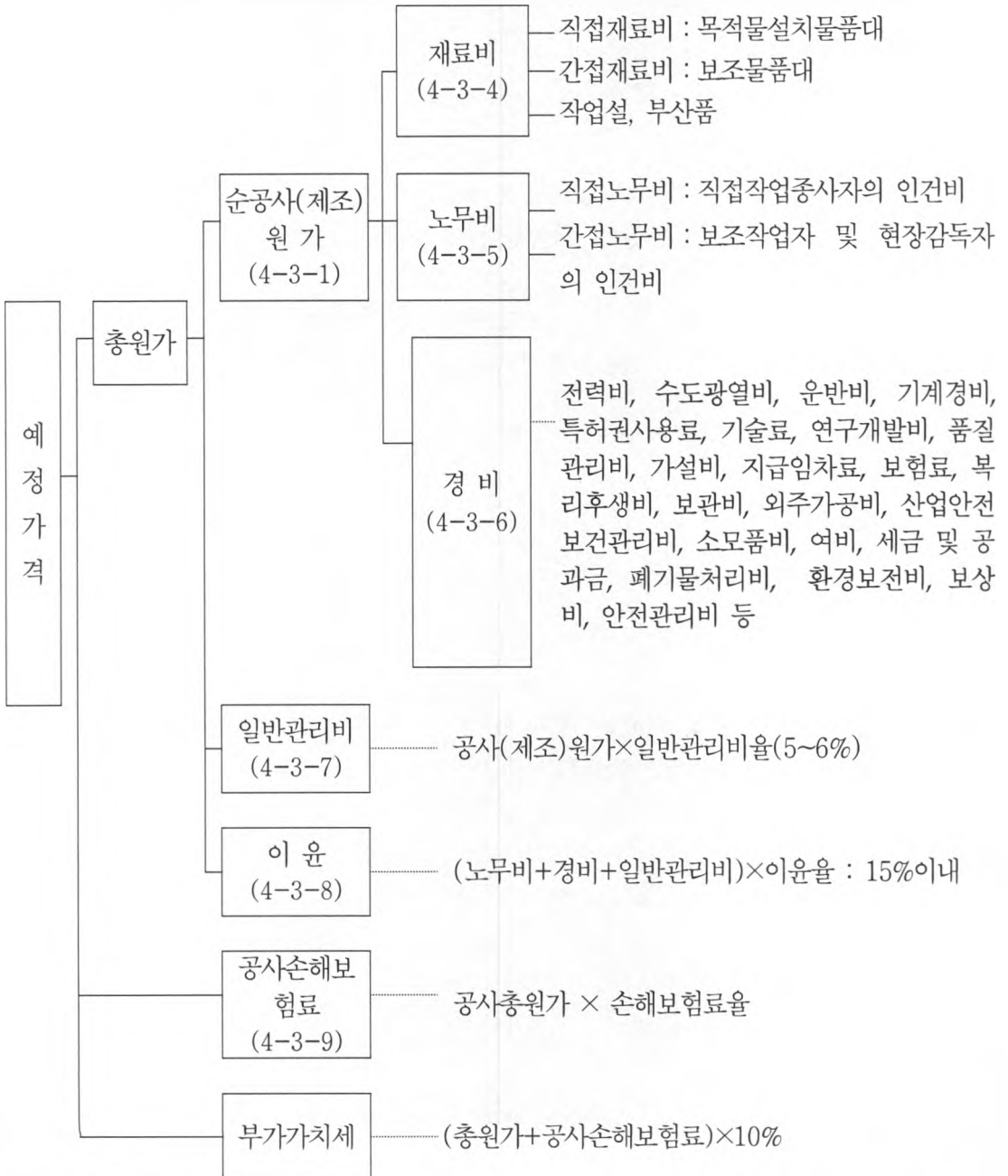
4-3-1 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3-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3-3 공사의 원가체계



4-3-4 재료비

1. 재료비의 구성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2.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4-3-6 제3호 (13)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3. 간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4.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5.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4-3-5 노무비

1. 노무비의 내용은 4-1-3과 4-2-4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공사에 있어서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계상방법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 고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14.5	
	토 목 공 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 사 규 모 별	5억원 미만	14	
	5~30억원 미만	15	
	30억원 이상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 + 17%+14.5%) / 3 = 15.5%

4-3-6 경비

1.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2. 경비의 산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 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8) 가설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4-3-9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4-2-4 제2호 (4)목 및 4-3-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4-3-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4-2-6과 같고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4-3-8 이윤

-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3-9 공사손해보험료

1.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 공 식 >

$$\text{공사손해보험료} = \text{공사총원가} \times \text{손해보험료율}$$

2.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4-3-10 공사손해보험 가입

1. 근거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2. 보험의 가입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의 범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가입금액

- (1)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2) (1)목에 규정한 순계약금액에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가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4)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보험가입금

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6. 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2)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 (1)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1)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

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 (4)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10.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상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보험금의 사용

- (1)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4-4-1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4-2 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4-4-1의 제1호 (2)목 및 (3)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4-4-3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4-4 인건비

1. 인건비의 개념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여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2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인건비의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4-4-5 경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

(1) 여비의 계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계상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4-2-5 제3호 (3)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4-4-6 일반관리비등

1. 일반관리비의 계상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이윤

(1)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4-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1.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 상대방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4-4-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4-4-6 제1호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4-5-1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1.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2.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호 및 4-4-1 내지 4-4-6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과학기술부 공고)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조달청)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환경부 고시)
- 공무원여비 규정(대통령령 제18673호)
- 시중노임단가 기준
 - 공사부분노임단가 기준(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노임단가 기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0)목
-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3)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 고용보험료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0)목
-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8)목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결정
- 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 계약의 이행보증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0)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0)목
-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환경보전비

-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및 별표 15(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1)목

● 품질관리비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7)목
-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2-5 제3호 (3)목
-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4)목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5, 동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
-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4)목

● 공사손해보험료

-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 2) 공사계약 일반조건 IV-4.(손해보험)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9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실적공사비

5-1-1 실적공사비의 개념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

5-1-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1-3 실적공사비의 자료관리

1.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서 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

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및 표준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 실적공사비의 의한 예정가격산정

5-2-1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2-2 예정가격의 작성

1.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의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5-2-3 직접공사비

1.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text{직접공사비} = \text{공종별 수량} \times \text{단가}$$

2.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4-3-6를 준용한다.

3. 제1호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은 별도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4. 직접공사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5-2-4 간접공사비

1.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에 조정계수와 비목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 식 >

$$\text{간접공사비} = \text{직접공사비}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text{비목별 요율}$$

(1) 조정계수 : 공사규모(금액), 공사기간에 따라 조정계수 설정

(2) 비목별 요율 : 법정요율로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요율과 동일

2.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4-2-4의 제3호 및 4-3-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 (7) 국민건강보험료
 - (8) 국민연금보험료
 -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 (10) 기타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3. 제1호의 비목별 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4. 5-2-3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5-2-5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4-2-6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5-2-6 이윤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5-2-7 공사손해보험료

“4-3-9 공사손해보험료”와 “4-3-10 공사손해보험 가입”의 규정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5-2-8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절 원가계산용역기관

6-1-1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1.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3. 용역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 (2) 구성인력은 다음 각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
 -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3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3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 별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 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6-1-2 원가계산용역의뢰시 주의사항

1. 계약담당자는 6-1-1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6-1-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경우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당해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5.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원가계산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에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절 원가검토기관

6-2-1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

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3.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 (2) 구성인력은 다음 각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
 -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3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3인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3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인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자유치사업 등과 관련된 원가의 적정성 검토
-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서 및 예정가격에 대하여 가격산정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2-2 원가검토위탁시 주의사항

1.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6-2-1의 전문기관 중에서 당해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검토서에 당해 원가검토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6.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 의뢰시 원가검토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에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1절 특례사항

7-1-1 특례설정등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자료의 비치 등

7-2-1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원가,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조·공사원가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위 제1호를 준용한다.

7-2-2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7-2-3 세부시행기준

1.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치부산물 등(△)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수·역량·비광열·비 운반·반비·광열·비 감가·상각·비 수리·허권·선·비 특기·기술·료·사·용·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 원 가				

<별지 제2호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비목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접촉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연품구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비	보험료			
		보복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역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원 가			

<별지 제4호서식>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까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상의 용역의 내용 및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사도 경리관귀하

실적공사비 총괄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공종수량×실적단가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규모·기간·종류별)			[직접공사비] ×계수×율
	산재보험료			[직접공사비] ×계수×율
	고용보험료 (등급별)			[직접공사비] ×계수×율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종류별)			[직접공사비] ×계수×율
	안전관리비 (규모·종류별)			[직접공사비+관급자재] × 계수×율
	기타법정경비 (규모·기간·종류별)			[직접공사비] ×계수×율
	환경보전비 (공사종류별)			[직접공사비] ×율
일 반 관 리 비				[직접+간접] ×율
이 윤				[직접+간접+일반] ×율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 직접공사비 : 실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간접공사비 : 실적공사비를 일부 공종에 적용하는 경우도 실적공사비 방식에 의해 산정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 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0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2,724,727원
연구원	월 2,089,283원
연구보조원	월 1,396,617원
보조원	월 1,047,499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10년도 기준단가이며, 2011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별표 3 >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기술자격기준	상경제열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 년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 년 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2 년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 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 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 육이수후 5년이상, 기타 10 년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 자, 기타 5년이상	

-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문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10. 6. 3 제주특별자치도예규 제 35 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도본청의 과·담당관
 -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다. 도의회사무처
 - 라. 행정시
 - 마. 도 지방공기업
 - 바. 도 출연기관(단, 50퍼센트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지침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다.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
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4.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예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5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는 3억원 미만)

나. 2억원 미만의 용역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3. 조달청에 직접 계약 요청하여 발주하는 사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할 여유가 없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5.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구매계약인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1명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할 경우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품목물품이나 자체 단가계약 물품
7.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써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항(기본계획 및 공법 변경)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7호 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분명하게 적어 발주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올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조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계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발주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지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파일 및 도면) 4. 품셈에 대한 내역서 및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5.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실시설계용역보고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발신명의	
------	--

[별지 제2호]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용역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2. 비목별 기초계산서 3.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4. 인쇄물산출 기초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5. 기타 참고자료(과업지시서, 계획서, 견적서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			

발신명의	
------	--

시행	00000과-@N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신자		협조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뒷면)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적용단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〇 〇 〇 과장 성명 (인)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건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대표자 :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일위대가표 3.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제조원가계산서

(뒷면)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단위	산 출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수 량	단 가	금 액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경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o o o 과장 성명 (인)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뒷면)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 ○ 과장 성명 (인)

시행	00000과-@N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신자		협조				
접수번호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168 -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뒷면)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 료'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 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 름출력비'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 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 ○ 과장 성명 (인)

[별지 제7호]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1.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지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4.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발신명의	
------	--

계약심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 1. 건설계약연구원** (<http://www.csr.co.kr/>)
 - 기계경비 산출, 질의응답 유권해석, 제비율 적용 기준 등
- 2. 한국건설신기술협회** (<http://www.kcnet.or.kr/>)
 - 분야·공종별 신기술 현황 파악
- 3. 서울시 계약심사 동아리** (<http://cafe.daum.net/geyaksimsa>)
 - 서울시 계약심사 사례 각종 원가심사관련 자료
- 4. 서울외국환중개(주)** (<http://www.smbs.biz/index.jsp>)
 - 주요 통화기준율 확인
- 5. 한국건설자원협회** (<http://www.koras.org>)
 - 품목별 건설폐기물처리 비용, 운반수집 비용 단가 확인
- 6. (사)한국원가관리협회** (<http://www.kcaa.or.kr/>)
 - 전국 원가분석기관 현황 및 원가분석 실무자료 확인
-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www.sw.or.kr/>)
 - SW기업정보 및 통계서비스, SW노임단가, SW사업대가의 기준 등 실무자료
- 8. 한국전기공사협회** (<http://www.keca.or.kr>)
 - 전기공사 관련 자료 및 신기술 자료, 전기·통신·신호 원가계산 자료 등
- 9. 한국조경수협회** (<http://www.klta.or.kr/>)
 - 조경수목 가격 확인(조달청, 시중거래가격)
- 10. 한국지반공학회** (<http://www.kgshome.org>)
 - 지반공학에 관한 자료 및 신기술 자료, 학술지 및 논문집 등

11. 한국건설감리협회 (<http://www.gamri.or.kr>)

- 감리노임단가 등

12.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 공사 적산기준, 견적기준, 기술자재 등

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http://www.kict.re.kr>)

- 실적공사비, 건설기술 관련 연구자료, 기술자료 등

14.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 가격정보, 자재단가, 관련법령 확인

15.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go.kr>)

- 측량노임단가, 수치지도 관련 자료 등

16.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 건설사업대가기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설계감리대가기준, 측량용 역대가기준,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등

17.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등

18.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감리노임단가 등